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2. 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장 예 순

#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2월 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거주 밀집지역인 “영구임대주택 단지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,
- 나.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비·보수비의 지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”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 제4호).
- 나.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에 유지비·보수비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5호).
- 다. 보조금 지급절차 및 정산 등에 대하여 「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의하도록 함(안 제9조제7항).

### 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활용도를 다양화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개정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'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'을 포함시켜 저소득층이 밀접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비와 보수비 지출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용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#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신설 및 개·보수와 소규모 임대주택의 유지·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정비와 입주민들의 생활불편개선,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금번에 신설되는 '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'의 경우 앞으로 많은 예산의 지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추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분배로 모든 사업이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